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군방첩사령부는 그동안 군 방첩정보, 군사보안 및 안보수사 등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단일기관에 과도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군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 및 통제체계를 전면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한편, 국방부가 방첩·보안 기능의 재설계를 위해 2025년 9월에 구성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에서 현행 조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단일 기관에 집중된 과도한 임무와 권한은 권력기관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일부 기능은 본연의 임무와 관련성이 낮은 측면이 있다고 보고 핵심 임무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상기와 같은 요구를 반영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군 방첩정보와 군사보안 기능은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을 각각 설치하여 분리 이관하며, 안보범죄의 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시행하고자 「국군방첩사령부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구조를 해소하고 기능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본문)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해 부대령을 폐지함.

나. 다른 법령의 개정(부칙 제2조)

「국군방첩사령부령」에 의거 부대 명칭 등(국군방첩사령부, 국군방첩 부대, 국군방첩사령관)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 12건의 조문을 새로운 부대 명칭 등으로 일괄 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국군방첩사령부령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의 ‘국군방첩사령관’을 ‘국방방첩본부장’으로 한다.
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의 ‘국군방첩사령부’를 ‘국방방첩본부’로 하고, 제5조제2항제6호에 ‘국방부조사본부’를 신설한다.
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의 ‘국군방첩사령관’을 ‘국방방첩본부장’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제23호에 ‘국방보안지원단장’을 신설한다.
4.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의 ‘국군방첩사령관’을 ‘국방방첩본부장’으로 한다.
5.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2호의 ‘국군방첩부대’를 ‘국방방첩부대’로 한다.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 ‘국군방첩사령부’를 ‘국방방첩본부’로 한다.
7.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제5호의 ‘국군방첩사령부’를 ‘국방방첩본부’로 하고, 제47조제5항제6호에 ‘국방부조사본부’를 신설한다.
8.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의 ‘국군방첩사령부’를 ‘국방방첩본부’로 하고, 제2조제3호아목에 ‘국방부조사본부’를 신설하며,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방정보본부의 본부장 및 국군방첩사령부의 사령관’을 ‘국방정보본부의 본부장, 국방방첩본부의 본부장 및 국방부조사본부의 본부장’으로 한다.
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의 ‘국군방첩부대’를 ‘국방방첩부대’로 하고, 제13조제2항제1호의 ‘국군방첩사령부’를 ‘국방방첩본부’로 한다.
10.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의 ‘국군방첩사령부’를 ‘국방방첩본부’로 하고, 제2조제2호마목을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하며, 제2조제2호마목에 ‘국방부조사본부’를 신설한다.

11.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마목의 ‘국군방첩사령부’를 ‘국방방첩본부’로 하고, 제2조제6호바목을 제2조제6호사목으로 하며, 제2조제6호바목에 ‘국방부조사본부’를 신설한다.
12.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제2항제15호의 ‘국군방첩사령부’를 각각 ‘국방방첩본부’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연 락 처	(02) 748 - 6575